

제420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16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0)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1)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5)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1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7)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2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상정된 안건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5

| | |
|---|---|
|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 | 5 |
|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 | 5 |
|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 | 5 |
|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 5 |
| 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0) | 5 |
|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1) | 5 |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 5 |
|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5) | 5 |
|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 5 |
|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 | 5 |
|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 5 |
| 1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 5 |
|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 5 |
|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 | 5 |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7) | 5 |
|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 | 5 |
|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 5 |
|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 5 |
| 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 5 |
| 2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 5 |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박정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예, 말씀하세요.

○강유정 위원 오늘 심사 안건 중에 영비법, 영발기금이 있지요. 작년부터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입장권 부과금법이 문화예술법소위에서 심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상당히 좀 열띤 토론도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숙려하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에 부과금 폐지법안으로, 세입 부수법안으로 상정이 되면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부과금만큼의 관람료 인하가 사실은 전혀 소비자한테는 와닿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하지만 영화 관객이나 영화계에 실질적 혜택 없이 극장사만 수입이 지금 증가하고요, 그 부과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 혜택과 영화계 혜택은 전무한 상황인데 벌써 1월 1일

부터 부과금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빠른 상황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급하니까 영비법을, 오늘 안건 중에 뒤쪽에 있더라고요, 가장 앞쪽에 먼저 좀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양문석 위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우선 전체 상황과 저희 상임위 상황,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다가 이게 넘어왔는데 우선 첫째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지요, 용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예.

○소위원장 박정하 대안을 제시해서 그만큼보다 충분하다고 문체부에서 판단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었어요, 정부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예.

○소위원장 박정하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 전체 예산심의가 유감스럽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유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월 1일부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상임위와 별도로 전체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딱히 우리 상임위가, 반드시 우리 상임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님 말씀 주신 건에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받아서 앞으로 땅거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상임위 차원, 우리 법안소위 차원에서도 오늘 꼭 그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보고자 하시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충분히 논의하자고 오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안을, 저도 배려를 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일부 동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순서대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인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밖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깊게 숙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행정실을 통해서, 수석전문위원님 통해서 들었던 건 여기서 논의할 당시에 영화인들이 나와서 의견 개진할 기회를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3분 내로 간단히, 대충 내용은 저희가 아니까 2~3분 내로 그 타임에 들어와서 말씀 주시는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 정도 와서 당신들 힘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위원장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 정도는 저희가 배려해 드릴까 합니다.

○정연욱 위원 그 정도는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양문석 위원님.

○김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의 배려도 고맙고 그다음에 영화인들이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왕하는 김에 밖에서 저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먼저 이 안건을 시작해서, 저분들이 굳이 오늘 하루 종일 저 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의 배려는, 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주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영비법이 우리 법안1소위에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쭉 그냥 계속 끌어왔었습니다. 또 예산 통과 문제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 부분이 굉장히 간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복도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관한 문제라면 법안을 좀 빨리 땡겨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들은 바로는 국민의힘 의총이 11시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또 밖에 기다리시는 영화인들은 계속 아마 기다리실 것 같고, 이 안건이 통과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조금 땡겨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연욱 위원님이 의견 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법안소위 여러 번 계속해 왔지만 논의가 길게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일부러 오히려 돌려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의가 전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면 그걸로 시간을 앞에 너무 많이 빼먹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돌렸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빼서 논의를 하면 저는 오늘 법안소위 하루 종일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밖에 계시는 분들 먼저 들어와서 당신들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고 이 법안은 순서대로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의총이 11시부터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법안소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총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 의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문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간은 좀 넉넉히 줍시다.

○정연욱 위원 2~3분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이게 너무 길어지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려서 축약해서 말씀 주시고 다른 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서 상정과 상관없이, 그냥 저분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의견 청취니까 상정은 이따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게요.

잠깐 들어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장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방청인의 진술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상정하시고 안건과 관련해서 듣는 것으로 하시면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청을 드리자면 저 영화인들께서는 이 안건이 어떻게든 처리가 될 때까지는 안 가시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뒤로 미루면 그 논의시간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서 계셔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한 번만 더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법안 처리가 마

냥 늘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하루이틀 전이라도 먼저 말씀을 주셨다면 그 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회의에 닥쳐서 오신 건이라 그 부분은 오히려 말씀 주신 영화인들도 이해를 해 주십사,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국회 상임위 그다음에 법안소위도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점은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상정을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8)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0)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1)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5)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1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7)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2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10시13분)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1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안 심의에 앞서서 우리 영화인들께서 밖에 계십니다. 저희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영비법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시간을 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들 이해하시고 동의하셔서 시간을 잠깐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오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해서, 저희가 원래는 한 3분 정도인데 말씀 주시고 경청을 하겠습니다.

(○최낙용 방청석에서 — 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라고 있습니다. 한국감독조합, 제작가협회, PD조합 등 등이 소속돼 있고 한 21개 단체가 들어 있는 곳이고요. 거기가 따로 대표나 이런 운영 체계가 아니고 간사단체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간사단체 대표 중의 1명을 맡고 있는 최낙용이라고 하고요.

제가 2022년, 2023년, 2024년도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영화 발전기금을 모태로 해서 예산 상황을 좀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 왔습니다.

영화산업위기극복연대는 지난해 4월에 정부에서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영화계 제단체가 모여서 결성한 단체입니다. 영화산업 부과금이 그동안 한 20여 년 정도, 2007년에 만들어져서 한국영화산업의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과금 폐지를 하시면서 새로운 계획이나 대체 작업까지도 하신다고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2024년이 다 가도록, 현재까지는 부과금 폐지가 됐지만 다른 계획이나 대체 지원에 대한 어떤 일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초에 부과금 폐지의 주요한 이유였던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부분도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관객들은 지난해 티켓 가격 그대로 티켓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득 자체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또 산업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 현재는 극장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 영화인들은 영비법 그 부과금 부분을 빨리 재입법해서 다시 한번 한국영화산업이 발전되고 또 다시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국영화산업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문체위 위원님들이나 전문 위원님이나 또 문체부에서 나오신 차관님이나 국장님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저희 영화인들이 정말 열심히 영화 만들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법 발의된 것 적극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통과돼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질문 좀 해도 되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말씀하세요.

○**양문석 위원** 티켓 가격이 올 1월 중에 전혀 인하된 티켓 가격이 없다……

(○최낙용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최낙용 방청석에서 —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극장에 가서 소비를 하고 확인해 본 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사실이면요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전혀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최낙용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을 시작하셨다면, 1월 1일부터 대체에 대한 정책이나 정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적어도 영진위나 문체부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극장 쪽과 협의를 한다든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부나 영진위가 일절 티켓 가격과 관련해서 사전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최낙용 방청석에서 — 예, 적어도 극장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체부나……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제가 영진위원 임기를 올해 2025년 1월 3일까지 했기 때문에 영진위 내에서 극장과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위원으로서 들어 본 바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예.

○**강유정 위원** 영화관 부과금 폐지 개정안이 국회 통과한 이후에 문체부가 업계와 회의를 진행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혹시 업계와 문체부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금 폐지와 관련한 회의나 혹은 대책 마련이 있었습니까?

(○최낙용 방청석에서 — 입장권 관련해서 문체부가 따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영진위 위원으로서 제가 보고를 받았을 텐데요. 아니면 영진위 사무국에서 저에게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관련해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회의나 자리를 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국장 윤양수입니다.

우리가 부과금 폐지에 따라 12월 30일에 상영관 측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인하가 되니까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제가 각자 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영화관에 보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상영관협회하고……

○**강유정 위원** 아니요, 저는 영화인이라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공문 말고 회의 개최했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동문서답하셨습니다. 회의 개최했느냐 물어봤고요, 영화인과 만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회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회의 안 하셨지요, 영화인 안 만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소위원장 박정하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의 시작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양문석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들었고요. 콘텐츠국장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논의가 될 테니까요.

제가 문체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계원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조 위원님 지금 말씀하세요.

○조계원 위원 지금 일단 소비자 부담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화인연대에서는 앞으로 이 기금의 안정성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성……

(○최낙용 방청석에서 —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코로나 기간에 이미 고갈이 됐고요. 저희가 2019년 정도에는 한 2000억 가까이 됐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미 고갈됐고 2025년 올해 예산은 제가 알기로 체육기금에서 좀 들어왔고요. 2024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적립된 기금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미 다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2025년에는 체육기금에서 600억이 지금 전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고갈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시 채입법돼 가지고 부과금이 진행되지 않으면 2026년 예산도 어떻게 할지 지금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국장님 말씀에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정말로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문체부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폐지되고 나서 그것 관련 한 대책이 없다고 한 게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콘텐츠국장과 1차관이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분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화부가 반박하면 또 현장 영화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건지, 안 그러면 차라리…… 지금 저희들도 11시에 잠시 일어나야 되는 일정이라서……

○소위원장 박정하 양문석 위원님, 제가 무슨 취지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앞서 제가 정리한 것처럼 저희 법안소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심의하시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소위는 저희 위원님들과 문체부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국회 측 그리고 정부 측 이렇게 해서 의견 개진해서 오늘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었고 지금 영화인들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의가 계속되면 오전 내내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당겨서 심의하자는 것도 양해를 구하고 뒤로 미뤘고, 밖에 추운데 오셨으니까 먼저 의견을 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지금 25분이니까요, 예정했던 것보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정컨대 이미 한 20분 정도 저희가 소요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우리 전체회의나 이럴 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방

식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이걸로 우리 영화인님 말씀 주시는 건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금 영화인들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도 많이 논의를 했잖아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었으며,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비법 조항을 조정해서 3~5% 주고 부과금을 하면 대충 얼마의 예산이고, 문체부에서 작년에 준비했던 건 대충 어느 정도의 규모였으며 작년 연말에 정부 예산, 우리 예산이 6조 7000억 정도 정리가 돼서 국회에서 심의되는데 이게 합의가 없이, 협의가 없이 진행이 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저희가 영화진흥정책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영화진흥기금, 그러니까 지금 부과금을 통해서 확보하는 재원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결손이 컸던 시기도 있었고 2024년,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부과금만을 가지고서 영화진흥재원을 확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체육기금에서 이미 한 300억 정도가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650억 가까이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결손을 예상을 해서 체육기금에서 한 600억 정도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이 부과금의 결손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재원 자체는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의 기본 방향이었고.

그리고 아울러서 코로나 이후의 전 세계 영화관 관람객 회복률을 보는데 특이하게도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만 코로나 이전 시기로 회복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그 나라의 문화나 산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영화관이, 이 부분이 관람객 숫자가 확보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은 사실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국고 재원이 됐건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체육진흥기금이 됐건 다른 재원을 통해서 영화진흥에 대한 재원 확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법안이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했던 예산안이 정리가 안 되고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 했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이건 이따 법안 상정되고 나면 그때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추운 날씨에 와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낙용 방청석에서 — 감사합니다.)

조금 미진한 것 있으면 이따 말씀 주시고요.

양문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게 11시에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양문석 위원 예.

○소위원장 박정하 전부 다? 전체 다 이석하시는 거예요?

○양문석 위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박정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원이 되면, 저도 저희 당이 11시에 의총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 남아서 회의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연장 운영자로부터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연장 인파 밀집에 대응하기 위한 관할 경찰서의 지원 및 질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청은 신중 검토 필요 의견으로 경찰관서가 재해대처계획을 통보받아도 안전상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및 근거가 없어 개정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제2항은 경찰관서의 장은 재난의 발생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은 인명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저희 문체부 의견과 같습니다.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박정하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통보만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혹시 문체부에서 검토한 건 어떤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 실효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행령상에서, 지금 재난안전 기본법에 관련된 부분도 시행령상에서 경찰청 쪽에서 의견 나온 것들을 가지고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령상에서 그 부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대형 공연 같은 데 가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항상 인명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민간인, 사설용역업체 같은 분들이 와서 질서유지를 하는데 그러면 통보를 하면 경찰이 경찰관을 보내서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는 거지요? 통보만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통보를 하면 경찰청 쪽에서는 그 계획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몰리는 인파의 예상되는 숫자에 비해서 안전관리요원이 부족하다는가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인력을 동원하는 판단에 관한 부분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시행령상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동욱 위원** 보완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의사일정 제2항,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니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 과세자료 이용이나 대금지급정지와 같은 간접강제수단을 통해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과징금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르도록 각 개별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보여 타당한 내용으로 봅니다.

다음 안 제41조제4항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문체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은 이미 작년 10월 법률 개정 시 반영되어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세 항을 최종적으로 대안으로 의결하실 건데 한 항, 한 항 설명드리고 한 항, 한 항 토론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먼저 설명드리고 논의하시고 다음 것……

○**소위원장 박정하** 그렇게 할까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렇게 하나씩 정리해 가시는 게……

○**소위원장 박정하**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정부 측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서 수석전문위원이 남은 2건 다 합쳐서 한꺼번에……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러면 나머지 2건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다음 3항,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항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용역 수행 현장에서의 불공정계약 현황 등을 파악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며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실태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종사자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독립한 사무소’를 ‘사무소’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공유 오피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시설기준의 완화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창업·영업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정부 측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 자료에 대해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돋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자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온라인서비스는 보호자 등이 이용 할 수 없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을 돋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하는 행위도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내용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의견 없습니다.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건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재 법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부처·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기 어렵고 지자체 보유 데이터의 연계·수집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내용으로 봅니다.

다만 안 제11조제3항은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화정보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부칙에서 ‘한국문화정보원’을 ‘정보원’으로 약칭함에 따른 자구 정리를 위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좀 천천히 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수석이 지금 읽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아.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이 소위 자료를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문석 위원 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양문석 위원 문서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구두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김재원 위원 쪽이 달라요.

○조계원 위원 쪽수가 달라요, 쪽수가.

○김재원 위원 2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1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아, 제가 2쪽을……

○조계원 위원 밑에 나온 페이지 수대로 얘기……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참고로 저는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1쪽이 아니라 2쪽을 봐 달라고 특정을 제가 해 드린 겁니다.

○양문석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앞으로 계속 저는 대비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항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편하신 대로 진행할게요.

(「하나씩……」 하는 위원 있음)

하나씩 진행하시지요.

○양문석 위원 그 하나가 뭔데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한국문화정보원 설립 근거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정부 의견과 같습니다.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7항이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조계원 위원** 의결 안 하고 넘어갑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아니요, 합쳐서 하는 거라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합쳐서 대안으로 의결할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서 및 평가를 반영한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체부장관은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출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수행기관과 지표 개발 등 관련 문화영향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10쪽을 보시면 안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서 전담기관 지정과 함께 지정취소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을 고려하여 제3항으로 전담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정부 의견과 같습니다.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앞의 한국문화정보원 제가 조금 아는 조직이기는 한데 필요성 동의하고 요. 법제화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큰 조직은 아닙니다. 큰 조직은 아닌데 문화기본법에 넣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라든지 콘텐츠산업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안으로 의율해서 그 법안 안에 개정해서 넣어도 충분히 소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발의도 해 볼 생각이니까요, 이 문제를 굳이 문화기본법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와 수행 업무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기본법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여기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발의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이기현 위원** 예.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하고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원은 만들어진 지 22년 된 조직이고, 애초에 만들어진 계기가 그 이전에 98년 도부터 시작되었던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든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

축사업이 모태가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문체부에 정보화담당관실이 만들어졌고 문화정보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재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정부부처에 그 부처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이러한 정보화 지원기관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규모가 저희 문화정보원보다는 네다섯 배 이상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문화정보원이 현재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 조직, 한 200억이 좀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큰 조직은 아니지만 지금 문화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영역만이 아니라 일반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문화유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의 전반적인 정보화라든가 최근에 특히 AI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부터 문화유산까지를 총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규모는 좀 작다 하더라도 문화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 현재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타 부처의 사례를 보건대도 문화정보화라는 영역 자체가 특히 AI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역할 확대 가능성도 감안하실 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라든가 다른 개별 산업기본법, 그러니까 산업 관련 규율법보다는 저희 쪽에 있는 기본법 쪽에 담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수석님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문화기본법에 담게 된 이유가 소위 자료 2쪽을 보시면 제 11조 3항에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문화정보원이라는 특정 기관을 법에 명시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조문의 바로 가지 조문으로, 11조의3으로 이 조문이 들어가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한 가지 보충설명드리면 전담기관 지정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화관광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전담기관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법정 조직으로 똑같이, 여기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례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정보원의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 저희가 법정 조직으로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의견은 여기에 담는 것보다는 다른 법안을 발의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 주시는 거고, 이 건에 대해서 정부는 그냥 가자 하는데 수석님께서는 법체계상, 내용과 상관없이 이게 지금 여기에서 법안을 정리해서 나아가고 나중에 이기현 위원님이 별도로 법안을 발의했을 때 그것을 심의해서 그 법과 조율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것을 계류해 놓고 나중에 발의했을 때 합쳐서 하는 게 맞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인데 지금 하여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규정이 현재 11조 3항에 현행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법에서 어떤 문화정보화 관련된 규정을 넣는다면 이 규정과 조금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소위원장 박정하 충돌할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개정을 이 법에서 빼 주면서 그 법으로 옮겨 간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때 가서.....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소위원장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현 위원 차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문체부에서 문화정보원에 문화정보화 관련된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주지 않으셨던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취약했고요. 그리고 원이 갖고 있는, 제가 원의 직원도 좀 아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재정 지원 그다음에 인력의 문제 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단지 기본법 안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이외에 지원의 근거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신다는 전제로 해 주신다면 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겠고, 마침 제가 오늘 오후에 직접 문화정보원을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쪽 직원들이랑 토론을 할 시간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경청해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의한 대로 의결을 하고 이기현 위원님이 별도로 또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 더 충분히 논의해서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2건의 문화기본……

○신동욱 위원 이것 잠깐만 좀 여쭈어볼게요.

○소위원장 박정하 말씀하세요.

○신동욱 위원 문화영향평가 관련해서 5쪽 보면 ‘문체부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문체부장관이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영향평가라는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를테면 문화라는 것이 각 지역별로 문화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특성들이 있고 그런데 문체부장관이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이것 반드시 수정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문화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해할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규제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잠깐 법안의 유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 시기에 창의한국이라는 중장기계획 TF에 저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영향평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시기에 저희가 문화기본법, 그때는 제가 또 담당 과장이었었는데 그 시기에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시기에는 사실은 선언적인 조항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실효성이 많이 담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저희가 특정 문화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형태의 내용에 관한 걸 정리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예 문화가 배제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문화가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단지 건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요소가 가급적이면 들어가도록 하자라는 사실 그런 취지가 훨씬 강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장관이라든가 저희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서 이것을 임의 재단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만 전담기관이라든가 수행기관들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에서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전문가들이 그것을 리뷰를 하면서 지역성이라든가 어떤 문화의 변화, 흐름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의견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이걸 일일이 재단해서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자율성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문화의 영향, 문화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 가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동욱 위원 100%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문체부장관이 생각을 해서 ‘여기는 미술관이 반드시 필요하겠는데? 반드시 하나 넣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술관을 설립하라 이런 정도까지의 의견이 나아갈 사안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대체로는 지역에 있는 어떤 큰 단지 같은 걸 하나 만들 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문화향유시설을 위한 부분들이 보강되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약간 방향성 정도를 저희가 보통 제시를하게 되고. 지금 이게 규범적인 조항이고 선언적인 조항에 아직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처럼 이걸 강제규정으로 해서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계획을 집행을 못 한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못 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욱 위원 ‘따라야 한다’ 하면 강제규정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저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규범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획 자체가 아예 불가한 그런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완곡하게 저희가 규범적인 게 조금 강화되는 정도로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나가는 원래 갖고 있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 전체를 갖다가 중단시키거나 하는 효과까지 아직까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거기까지 가야지,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 또 규제에 관한 문제에 대한 반발이 워낙 심하고 하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누가 반발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 부분은 이게 20년 가까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금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넓어지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선언적인 규정에서 조금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인데 전담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현재 전담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이 이걸 직접적인 수행기관까지 하기가 좀 무리가 되는 게 이 법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1년에 한 6~7개 정도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6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단일 조직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타 부처를 보더라도 지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이 약 3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의 국공립연구소라든가 주요 대학들을 지정하면, 이쪽에서 수행기관으로서 잠재적인 연구용역기관이 되면 어떤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공모 같은 걸 통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수행을 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는 식이 됩니다.

○양문석 위원 저 잠시 나갔다 와야 하는데, 나는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이 부분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문화부만 못 따라가지 국민의 인식 수준은 이미 외국 가면 다 저러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러느냐라고 비판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오늘 처음 들어 보는데 문화부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수준으로 더 강하게 상향 조정해서 재정의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법제화되면 아까 대답 주신 문화관광연구원이 현실적으로 여기가 지정기관이 될 텐데 이 기관 하나 갖고는 안 되고 학계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더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래서 저희가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을 분리하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어떤 제도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담당하게 되고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연구용역 형태로 정리하는 부분들은 수행기관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이 분담되는 겁니다.

○이기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조금 아는데 문화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직이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예산 부분이라든가 인력 부분이 좀 많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양문석 위원님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규제적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문화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진흥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기반시설에 굉장히 충족시키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듣다 보니까 결국은 문화정보원이나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조금 더 확장되고 더 공고화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문화부장관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어쩌면 되려 축소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돼서 이것은 계류해서 저희가 전향적인 방안에서 더 이것을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문체위 자체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지금 강유정 위원님은 이걸 아예 계류해서 더 법안을 논의……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강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다 보니까 이 정도 수위가 아니라 사실은 문화영향평가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기관도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 법제가 어쩌면 문체부장관이 이렇게 전담하는 수준으로 기관의 확장을 조금 제어하는 효과는 없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다라는 질문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사실은 말씀드린 20년간 부처 안에서와 사회적 논의를 갖춰서 지금 현재까지 왔고요. 사실 이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 부처 간 의견수렴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태클을 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견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안 왔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처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 국회 회기 때 유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것에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까지 아예 규정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각 부처에서 다 이견을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 통과가 안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양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있지만 이게 저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했을 때 부처 간의 반발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는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어차피 다른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부처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이게 계류가 되면서 몇 년을 더 흘러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만 가더라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센 법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 준비 회의하면서도 담당 국·과장들한테 ‘앞으로 문화기본법이 저작권법을 넘어서 문체부에서 가장 센 법이 될 것 같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조항 개정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이게 다음번에 다른 형태로 논의가 확산이 될 경우에 이 법안의 진전 자체가 중단되거나 또 보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부처 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번 법안을 어느 정도 개정을 해 주시고, 지금 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양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받아서 그다음에 조금 더 강화된 개정안을 한 번 더 마련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부 측 용 차관 말씀도 감안을 하고 발의하셨던 황희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상황도 있고 하니까 이번은 이렇게 해서 저희 법안소위에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키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건에 대해서 더 논의하는 것으로, 대신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 측에서 일찌감치 시작하면서 올해 이런저런 예산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도와줄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2건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이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경우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30% 이상이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이견 없습니다.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여기서는 지역균형 얘기도 있는데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드리면 인구균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도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만 해도, 아시겠지만 서울 인구가 1000만을 찍고 이제 950만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을 뚫어서 1430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경기 남부에 있고 경기 북부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는데 수도권에 미술관 있으니까, 수도권에 박물관 있으니까 너희는, 서울·경기·인천을 통쳐서 하나로 이렇게 보고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로 보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관련돼서도 지방의 문화향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은 국가 의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 워낙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고 사실은 수도권이 교통난도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체부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문체위에서도 경기 북부 특히 고양 지역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지역별·인구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소위원장 박정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 즉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자로 하여금 국내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부과 및 동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해외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시 고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위반 시 자료제출 등의 절차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타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만 6쪽을 보시면 안 제9조3제1항에서 정보통신망법 등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보다는 동 사업자로서 독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 제2항으로 문체부장관이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 수, 매출액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안 제9조의4제3호 중 ‘이용자’를 제2조(정의) 규정에 따라 ‘독자’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음 10쪽을 보시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두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정부 측 의견과 같습니다. 개정안 전체 수정 수용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정연욱 위원 전반적으로 좀 심각하게 검토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 많습니다. 이게 주변 이해관계,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도 의문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반영된 의견 자체도, 이게 지금 국내대리인이라고 했는데 실제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이라는 게 해외에 본사를 둔 대부분의 업체들 아닙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나간다면. 이 부분에 실제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의 실효성 부분들이나 이게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해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하신 내용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해관계자가 되는 게 구글하고 그다음에 빙을 운영하는 2개 업체가 현재 타깃이 되어 있고요, 그쪽 업체들하고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이미 거쳤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미 지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에 또 유사한 기업들이 나올 경우에 직접 지사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른 법에 의해서, 유사한 법에서 대리인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2개 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인터넷 언론들, 인터넷 매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는 신문법이나 다른 기타 법안들하고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제재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대리인 등록 전제만 얘기하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언론 문제에 대한 대처가, 기본적으로 이게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그동안에 국내 언론들은 일반적인 법적 규제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라든가 자료 요구에 관련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언론으로부터 이런 부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개별적인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저희가 이런 해외언론사, 언론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게 됐던 부분인 것 이고.

그리고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관련된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른 법의 유사한 규정과 수준을 맞춰 가지고 과태료를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징적인 조치이긴 합니다마는, 2000만 원이 구글이라는 업체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실정법을 위반해서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하는 이미지의 면에서는 사실 금전적인 것 이상으로 큰 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법에 배치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정도 단계로 일단은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강유정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제임사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법률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같은 원리라고 일단은 봅니다.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에 국내대리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오히려 입법의 의무를 방기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역차별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우리나라 뉴스를 대개 소비하는 포털들은 꽤나 강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구글이나 빙이 대단한 영향력이 없어서 간과한 바가 있었지요, 한국인들이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포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평등하고 동등한 정도의 어떤 제재 혹은 법의 감시를 받는 그런 입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별문제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더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에 외국계 인터넷 언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제재 문제라는 걸 떠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뭔지 더 고민을 하고 나가야 될 영역이고, 이건 당장에 임팩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취할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더 조정할 게 무엇인지 더 검토를 해서 나가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말씀하세요.

○김재원 위원 저는 차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법인 사업자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강제하는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에 한 번도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미국 법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범죄자를 특정을 할 수 없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외법인들까지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들이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규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글로벌 기업이 아무리 덩어리가 크고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지금 문화 콘텐츠가 수출이 3위입니다. 문화 강국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관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참에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조금씩 더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현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대리인 지정이라는 게 정말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연락할 곳도 없고, 해외에 본사가 있다고 그래서 누가 책임자인지 확인할 길도 없는 그런 상황은 일단은 해소하자는 것이어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인터넷 베이스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언론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언론 소비자들도 언론 생산자들도 해외에서도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연욱 위원님 말씀, 걱정 져 100% 이해되지만 추가로 더 엿어서 이후에 신문 진흥에 대한 법 이제 개정을 해 나갈 텐데 이번에는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대리인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제출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구글이나 MS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책임을 방기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묻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관계나 조정 문제를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첫걸음에 대한 문제를 잘못 짚었을 때 시작부터가 꼬일 수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글이나 이쪽에 대해서 그걸 용인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우리가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그동안에 대리인 자격으로 해서 퉁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구글코리아의 권한을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가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구글코리아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본사의 의사결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포괄, 이게 어떻게 구글이나 MS나 외국계 대기업에 이걸 용인하는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충분히 관련 유사법을 같이 통합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계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계원 위원** 지금 여기 평가된 내용들,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일종의 가짜뉴스나 이런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피해를 끼친 업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다른 법적 대안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일반적인 조항들 외에 저희가 특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을 받는다거나 하는 규정까지는 이 법 내에서는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도 지금 그와 관련해서 해외인터넷뉴스사업자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나 그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대안들은 현재 우리 현행법상에서는 없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러니까 해외뉴스사업자로 특정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법안으로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해소되지는 못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첫 단추를, 현재로서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관한 부분조차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을 일단 아주 최소 요건만이라도 해소를 해보자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방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 보자라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해외 법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면 좋지만 지금 이 첫 단추를 거기까지 가려고 한다라면 아예 단추를 못 꿰는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진도를 나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해외 언론사, 아까 제가 왜 해외의 게임 대리사를 말씀을 드렸냐면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아주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고요. 폭력적이거나 혹은 선정적인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생각만 해서 가짜뉴스라는 이 범주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요.

요즘 거의 0세부터 핸드폰 손에 쥐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최소한의 법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자는 거지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으로, 2000만 원 정도의 벌금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유해한 뉴스 배포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놔야 되고요. 저는 이게 정치적 법안 이런 게 아니라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휴대폰을 비롯한 디지털 디바이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 10대라든가 혹은 0세예요. 0세부터 10대 사이에 영유아까지도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 법안은 오히려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전문위원님께……

전문위원님께서 그래서 수정의견을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독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거대 회사에만 하게 되면 우회적으로 작은 회사들도, 그것보다 중소 회사라도 얼마든지 크게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제일 큰 회사들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정의견이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망법에서도 해외 빅테크,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메타라든지 여러 빅테크 규제를 함에 있어서 문제는 상대가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지금 한국 국회에서 이런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 법안들에 대해서 한미 FTA 위반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모든 업체를 다 규제하려는 게 아니고 매출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자 수, 이게 망법의 입법례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빅테크들만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 등을 이유로 통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똑같은 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벌금이나 징역형 이런 것을 외국인에게 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로 가는 거고. 또 과징금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쪽에서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과기부 쪽에서는 과태료 2000만 원으로 지금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냥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재원 위원** 이 역시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제일 큰 회사들은 그래도 좀 보자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웬만하면 정연숙 위원님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말씀 주셨고 신동욱 위원님도 잠깐 일이 있어서 일어나시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일어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의견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정연숙, 신동욱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시니까 한 번 더 숙의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법안소위 심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항부터 11항까지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10항,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기준을 10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도모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점,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 현행법 제50조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발행권자나 출판권자가 표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도록 규정된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의 표지의무 관련 규정의 성격은 저작권자와의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한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계약상 의무 위반만으로는 형벌보다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로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2건 모두 이견 없고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의사일정 12항부터 15항까지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의사일정 12항부터 15항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 제출 법안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별도의 수리 행위가 없이도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각 법률에서 규율하는 인쇄업, 출판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영화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등의 신고사항은 행정청이 실질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행정청이 신고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하여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가 행정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들은 모두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정부 측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5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의사일정 15항은 방금 전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쟁점이 있는 18·19항 두 건 앞에 있는 16항과 17항 두 건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예.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의사일정 제16항,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불법비디오물 영업소의 폐쇄 및 불법비디오물의 수거 등 현행법에 규정된 행정상 강제의 절차 등을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 즉 직접강제에 해당하는 불법비디오물영업소의 폐쇄 및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불법비디오물의 수거·폐기와 관련하여 앞 항들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적법절차 원칙 관련 사항 등의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행위는 비디오물감상실 등 내 주류 판매·제공 등으로 비디오물 소극장업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의 경우 이같은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가볍성이 작다고 볼 여지가 있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두 건 모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16·17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이 건에 한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그러면 18항이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18·19항 같아……

○**소위원장 박정하** 한꺼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소위원장 박정하** 18·19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두 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작년 두 번의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법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찬반의견을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지난 소위들에서 토론 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논의의 편의를 위해 만약 부과금 징수 의무화로 입법화 시 조문화 내용을 수정의견란에 박스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안 제25조의2제1항 중 부과금 징수율의 상·하한을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2024년까지 대통령령에 규정되었던 것처럼 징수율을 명시하는 것이 명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정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안 제29조 1항 제2의2는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과 같은 등급분류 기준·체계가 신설된 1997년 10월 11일 이후에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23쪽을 보시면 부칙에 제2조로 상영등급분류 면제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개정 규정은 1997년 10월 11일 이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를 이 법 시행 이후 수입하거나 상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19쪽을 보시면 안 제30조는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 및 해당 영화업자가 수입·상영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인지를 영등위로부터 확인받도록 하는 규정인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필름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영화의 경우 최초 상영등급 분류 시에 수입·상영 관련 정당한 권리 확인을 하지 않는바 등급을 분류받은 수입영화의 재상영 시 내용의 동일성 여부 및 정당한 권리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신중 검토 필요 의견임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두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의 부과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 소위 때 정부 측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이 그림자 조세적인 성격이 있다는 부분들과 또 그 대안으로서 저희가 정부 측에서 관련 국고라든가 다른 기금 등을 통해서 기금의 폐지에 따른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이왕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에 개정안 부분에서 하나 다시 말씀드릴 부분은 현행법 이전에, 개정 전 조항의 경우에는 이 부과금 징수가 임의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두 의원님들의 안을 보면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난 2008년에 헌법소원 당시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이 합헌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아홉 분의 재판관 중에서 다섯 분께서 이 부분이, 부과금이 관람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합헌 결정이지만 그러한 다수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시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상임위까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이 나간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의견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이 강행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조항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헌법소원 내에서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강 위원님.

○강유정 위원 부처 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은 헌법소원의 취지를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조금 위험합니다. 헌법소원에서 그 부분은 강제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였고 일종의 다양한 의견, 소수의견으로 부가된 의견을 오히려 너무 크게 얘기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합헌 결정이 났다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2025년 영발기금 예산이 936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감액 기조라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못 됐다라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처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액수 전년 대비 441억 감액 규모거든요. 감액 규모인데, 왜 감액 규모가 된 건데 증액한 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부족분을 체육기금 전입금으로 600억을 채우기로 했고 복권기금에서 44억 9700만 원을 전입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의 불완전한,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영발기금에 대한 대체 자원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말씀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발기금이 좌지우지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예산 감액 기조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도 예산을 추경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추경은 안 되고 예산 조기 집행만 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 한다는 건데 이조차도 영발기금이 현재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던 것을, 그 액수가 적으나 크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조차도 계속해서 그때 그때 바람 앞의 불처럼 굉장히 존재가 위태롭게 만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예산 부분이라면 결국 이게 영화표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겁니다. 전혀, 처음에 출발을 좀 볼게요. 그림자 과세이므로 450원 줄여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좋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극장 상영 가액도 지금 현재 여전히 문제적이지만 이 풋값이 500원만큼은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500원만큼 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러면 500원에, 아무래도 영상 상영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영발기금의 탈루 의혹이 없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국정감사 때도 제기했지만 오히려 500원 자체가 영화인의 수입이 아니라 그냥 영화관의 수입으로 될 수 있는, 혹은 소비자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러므로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해 왔던 3%만큼 복원하는 제 법안은 안정적인 기금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3% 법안 마련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부분만큼 다시 되돌아가는 게 오히려 원상회복,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들은요?

지금 강유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헌법소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접근 시각에 따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재원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문예진흥기금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노력을 해 왔었는데 그런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기금이, 부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국고 재원이라든가 다른 재원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가 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한 번 모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정하 예, 말씀하세요.

○양문석 위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니에요? 손을 한 30초나 들고 있었는데……

○소위원장 박정하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자꾸 속기록에 남습니다.

○양문석 위원 초선이라서…… 죄송합니다.

챙점 두 가지거든요. 감세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문화부한테 또 화를 냘까 봐 지금 살짝 농담으로 출발하는데 끝까지 화기애애하게 한번 가 봅시다.

지난 소위 심사가 8월 27일 그다음에 11월 20일에 있었어요. 그때 양문석, 강유정이 감세효과 없다 그리고 의문시된다라고 문제 제기했어요. 그리고 조계원 위원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3% 부과금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다음에 박수현 위원 또한 영화계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편성도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불안정성을 지적했어요. 이기현 위원이 일반예산과 부과금을 구분해라,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김재원 위원,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다시 한 번 더 감세효과를 평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가깝냐를 고민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차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재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뭘…… 국장, 가만히 있으세요, 좀! 차관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녹취를 받아 쓴 거잖아요.

기본적인 쟁점은 감세효과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는 감세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도 안 했어요. 공문 떡 보낸 게 다야.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러면 문화부도 감세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없어요. 그림자 조세 운운하며 감세효과를 이야기하려고 논리적으로만 만들었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부처로서의 노력을 안 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감세효과, 그림자 조세 운운했던 부분은 뭘가의 흑막이 있다. 이것 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문화부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 아닌 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영화 진흥을 위해서 일반예산과 그다음에 부과금, 양날이 계속해서 운영돼 왔고 그리고 일반예산에 대한 강화는 너무너무 문화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기준에 존재한 부과금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대해서 어느 무엇……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안정성, 그동안 문화부가 내놨던 그 어떤 대안보다 안정성 유지에 있어서는 부과금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감세효과와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실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아무것도 대안을 내지 않고 1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버티기하는 것처럼 얹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게 지금 문화부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위원들이 소위 심사에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야당이라서 무시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정하 양문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취지는 다 전달된 거지요, 두 가지 건?

○양문석 위원 예.

○조계원 위원 저……

○소위원장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이 영화 부과금 폐지가 사실 논의됐을 때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대토론회를 하면서 처음 이 그림자 조세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체부에서 자체적인 정책으로 수립했던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문체부에 압박을 해서 떠넘기는 정책으로 사실은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체부에서 그래도 위원들이 이러한 3% 부과금을 오히려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기금의 안정화를 의도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은 아닐지라도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문체부에서도 영화계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발상이, 의도가 결합이 되고 있지 않은가. 누가 봐도 이 기금이, 영화발전기금에서 부과금이 폐지되면 기금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기금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게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영화발전기금이 독립영화도 지원하고, 어쨌든 문체부, 정부의 입장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있는 영화계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게 명백해 보인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들어 보고 싶네요.

○소위원장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하시고……

○이기현 위원 아니요, 먼저 차관님 말씀을 하고 할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일단 아까 앞서 제가 재론의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논의가 필요 없다라거나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미 저희가 소위에서 의결이 되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어서 상임위 의견으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 결론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재론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 것인데 그게 약간 좀 거꾸로 해석이 됐다라는……

○조계원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오해가 좀 됐던 부분인 것 같고.

재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영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과금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 왔다면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부과금이라는 것만으로 운영을 해 오지도 않았었고, 더욱이 저희가 관람객 감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재원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주요 논점은 오히려 아니지 않았겠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의견에 크게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말씀하세요.

○이기현 위원 이것 참, 제가 22대 국회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문체위 배정받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논의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 또다시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논거들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차관님도 다 인정하신 부분이어서 저는 더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시행이 된, 그러니까 부과금이 폐지가 된 이후에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 문체부에서 의도했던 방향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위에서 몇 번씩 얘기하고 전체위에서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소위에서 신속하게 의결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여기에 와 계신 소위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재원 위원 이기현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이루어졌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입장이 지금 1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이상 우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차라리 이 부분을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거수를 통하든 아니면 위원장님의 재량하에 있어서든 바로 본회의로 부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도 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연욱 위원님 말씀 주세요.

(「상임위 전체회의」 하는 위원 있음)

○정연욱 위원 물론 바로 본회의로 직행하기는 어렵고요.

○김재원 위원 예, 전체회의.

○양문석 위원 초선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정연욱 위원 저도 초선입니다.

○김재원 위원 죄송합니다. 초선이라……

○정연욱 위원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신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다만 이 법안 자체가 저희가 논의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술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과금 일괄 폐지 문제로 일괄해서 넘어가 버렸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논의 자체가 묻혀 버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법안을 처리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술하게 논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공감대 있었던 거고,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약간의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기 의견을, 이 부분까지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돼서 이렇게 일이 꼬였던 겁니다. 그 부분이 이야기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저희가 소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부과금 폐지 이후에 약간 갑작스럽게 아마 부과금 폐지 결정을 본회의에서 통보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대처방안은 좀 아쉬운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이 법안은 또 이 법안대로 일괄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충분히 의견은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정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님이 정리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의견으로 나와 있는 부분 문구를 읽겠습니다.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그래서 과거 임의규정, '징수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부분을 '징수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과거에는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법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100분의 3에 해당하는'으로 법률로 특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다 수정의견의 박스에 있는 내용대로, 이게 다 현행 규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정 전 과거 현행 규정으로 다 돌아가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시면 제2의2호에 보면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이 부분은 지금 문체부에서도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해서 같이 처리하되 다음 쪽, 19쪽을 보시면 제30조(동일성 여부 등의 확인)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고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해서.....

끝으로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인데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하고 제2조에는 상영등급분류 면제에 관한 적용례를 두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고, 정부 측도 이 의견에 대해서 이해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양문석 위원 정부 측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봐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견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오래 묵었던 것 일단 법안소위에서는 처리해 보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5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콘텐츠국장님도 팬찮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팬찮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산청 황권순 차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직무대리 황권순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의사일정 제20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20항, 소위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제한구역에 학술연구, 관리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수·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보존·활용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등에도 수리업자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직무대리 황권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현 위원 저는 좀 의견이……

○소위원장 박정하 예, 의견 말씀 주세요.

○이기현 위원 저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자연유산법에 의해서 국가유산청에서는 유산 관리와 관련돼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제3자에게 학술 등 연구 목적으로만 출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법률안은?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직무대리 황권순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3자의 추가적인 사업 행위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자연유산법상의 천연기념물과 명승 관리에 심각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산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1번 자연유산 보수·정비에 필요한 경우, 2번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3번이 그 밖에 유산청장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직무대리 황권순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3호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관련돼서 유산청에서 검토의견이 더 나와서, 이것 관련돼서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대안을 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이 건은 복잡한 건 아니니까 이기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조금 보완해서 다음 소위에서 처리할까요?

○이기현 위원 예, 계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지금 이기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지요?

○**국가유산청차장직무대리 황권순**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박정하** 얼마 전에 못 박는 것하고도 똑같은 것, 관련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그 부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은지 한번 생각하셨다가, 쟁점이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음 법안소위 때 처리하겠습니다. 그것 보완해서 이기현 위원님하고 상의해 주시지요.

○**국가유산청차장직무대리 황권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의사일정 제2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21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21항, 소위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형유산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무형유산 전승 교육사의 인정 대상을 이수자로 제한하는 현행 내용을 폐지하며 전승교육사에게 우수 이수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을 통하여 무형유산 정책의 계획, 시행 및 환류 과정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을 이수자뿐만 아니라 기량과 역량을 갖춘 일반 전승자까지 확대하여 평균 연령이 해마다 높아지는 등으로 인해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며 전승교육사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역량 있는 이수자가 추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직무대리 황권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1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그리고 국가유산청 황권순 차장직무대리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정부 측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유정 김재원 박정하 신동욱 양문석 이기현 정연욱 조계원

○첨가 위원(1인)

박수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정책기획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국가유산청

차장직무대리 황권순